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CESS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429호

의 안 명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국·공립대학교

의 결 일 2023. 5. 30.

주 문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5월 30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정승윤

위원 김태규

위원 박종민

위원 박상희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위원 강길연

위원 송현주

위원 홍세욱



[별지]

국민권익위원회
보다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개혁 과제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보호 방안

본 제도개선방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국민권익위원회

A C R I C

목 차

I. 추진개요	1
II. 현 황	2
III. 문 제 점	4
(1) 갑질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4
(2) 신고제도 처리 절차 및 안내 미흡	7
(3) 조사 불공정, 징계 부실	13
IV. 개선방안	16
(1) 대학 내 갑질근절 대책 마련	16
(2) 갑질 신고 제도 개선	18
(3) 신고처리 업무 공정성 강화	22
V. 조치사항	24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 (국정과제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 제도개선 건의사항('22. 9. 30.)

□ 추진배경

-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 설치, 연구비 등 지원
 - ※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03. 9. 1. 전면 개정)
 - ※ (현황) '15년 기준 423개 대학 중 356개 대학에 산·학·연 협력기구 설치(84.2%)
-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대학(원)생, 연구인력에 대한 구태적인 갑질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연구인력 사기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악화 초래
 - ※ (주요 사례) 학생 인건비 편취, 교수 개인 심부름, 부당한 업무지시, 불필요한 인력 차출, 강제 수강신청, 학부 실험 대행, 폭언, 성희롱·성추행 등
- 국·공립대 대학(원)생 대상 각종 갑질행위 근절과 권익보호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구현하여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경과

- 2022. 10.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작성
- 2022. 11. ~ 2023. 4월 관계기관 협의
- 2023. 5. 분과위, 전원위 상정

II. 관련현황

□ 갑질개요

-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행위

< 행위별 갑질 해당여부(교육부 교육분야 갑질근절 기본계획 자료) >

기속적 행정행위	⇒	위법한 집행	⇒	갑질○
	⇒	적법한 집행	⇒	갑질×
	⇒	인격적 모멸감	⇒	갑질○
재량적 행정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	갑질○
	⇒	재량권내	⇒	갑질×
	⇒	직무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	⇒	갑질○
기타 (행정지도, 조사, 사실행위 등)	⇒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인격적 모멸감	⇒	갑질○
	⇒		⇒	갑질×

- (교육분야 갑질유형) 이익추구형과 불이익추구형으로 구분

< 구분사례(교육부 교육분야 갑질근절 기본계획 자료) >

구분	이익추구형	불이익추구형
기관간	■ 부서 회식 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전가	■ 중학교 교감이 공사 관계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모욕적 발언
기관내	■ 중학교 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	■ 하급자 대상 폭언·폭행, 성추행·성희롱
특수관계 (교원·학생 관계 등)	■ 교수가 학생의 평가·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교수가 대학원생의 인건비 일부를 연구실 공통경비로 사용

□ 교육분야 갑질신고센터(교육부)

- (기본체계) 기관별 갑질신고센터 구축, 해당 기관 및 하부기관 갑질 신고 접수 및 사후조치 일원화
 - ※ 교육부는 기존 '갑질신고 및 상담창구'를 교육분야 전반 갑질·비위 신고를 접수하는 '교육분야 신고·제보 센터'로 개편
- (운영방식) 접수사안을 검토하여 자체 정밀 조사 및 조치하되, 상급 기관 이송사안은 조사결과를 보고
 - 정보수집 강화 및 직권조사 실시를 위해 전담 직원 지정
 - 갑질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위촉 또는 연계(외부기관)
 - 내부 구성원, 일반인이 익명으로 제보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기능 확보
 - ※ 필요시 타 기관 또는 민간 제공 익명 제보 시스템 연계 운영이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갑질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자체 종결 가능

□ 갑질신고센터 운영실적

- (교육부) 1,702건 접수, 9건(0.53%) 교육부 직권조사('18. 7 ~ 21. 8)

<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신고·접수현황('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계	비고
계		495	305	451	451	1702	
실명신고 (국민신문고 경유)	신고	414	196	321	176	1,107	
	직권조사	-	-	-	3	3	3건 모두 자체종결
익명신고 (자체접수)	신고	81	109	130	275	595	
	직권조사	1	1	2	2	6	종결2, 주의경고3, 감봉1

<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익명신고) 처리현황('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

합계	자체종결	경고·주의	행정지도	경징계	중징계	수사의뢰	조사중
595 (100%)	407 (68.4%)	83 (13.9%)	24 (4.0%)	13 (2.2%)	4 (0.7%)	5 (0.8%)	59 (9.9%)

Ⅲ. 문제점

1 갑질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 대학·대학원생 대상 갑질문제 지속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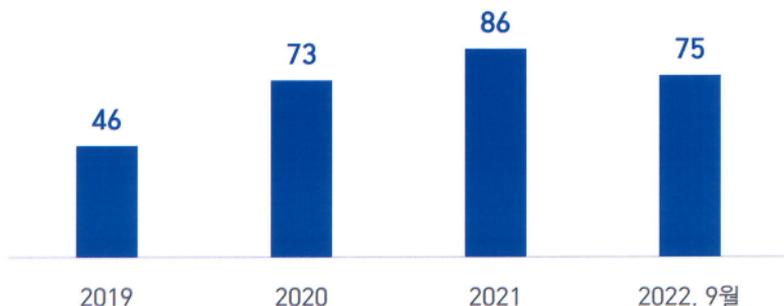
-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인건비 편취 등 대학 내 다양한 갑질사례 발생

【 대학 내 갑질사례(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대학원생 소개 내용) 】

- 수업 폐강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수료한 학생들을 강제로 수강신청하게 함
- 학생이 타는 차(외제차 등)에 대해 지적하거나 머리 스타일 등 외모를 지적
- 지도교수 자녀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대학원생 동원
- 지도교수 자녀의 공항 이동 등을 돕도록 지시
- 지도교수의 자녀 유치원 하원 도우미 / 개인 과외 등
- 대학원생이 학부 수업자료를 작성하거나 실험 지도 또는 대행
- 실습수업에서 수차례 수업에 오지 않거나 절반도 강의하지 않은채 종강
- 과제 종료 후 인센티브 정산 시 지도교수 위주의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분배
- 연구 조사비의 일부를 학생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지도교수가 사적으로 사용
- 회의비 허위작성, 선결제, 명세서와 다른 물품 구매 등 연구비 사용 부적절
- 연구실 내 행정업무를 전담시키면서 별도 보상이나 선택권 미부여
- 지도교수가 창업한 회사에 졸업 이후 의무로 근무 약속을 중용
- 외부 기업 자문 등 지도교수 개인 업무를 위해 발표를 준비하고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
-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문자로 폭언
- 통상 업무 이외의 시간에 문자와 전화를 하고 응답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줌
- 업무 지시의 시점과 마감 기한을 비상식적으로 설정하여 밤샘 등을 유도
- 수업의 일환으로 등산을 포함시켜 강제로 참여하게 함
- 디펜스 끝나고 식사를 접대하도록 중용

- 국·공립 대학 내 갑질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

< 국·공립대 갑질신고, 인권신고 연도별 추이('22. 10월 38개 대학 실태조사 결과) >



※ (참고) 대학원생 인권단체(대학원생 119) 갑질 제보사항 216건('18. 12월 ~ '20. 6월)

-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우려, 문제 해결 미흡 등으로 인해 갑질 문제 지속 제기

< 대학원생 인권침해 발생 원인('19. 9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

(단위 : 명)

발생원인	응답수	비율
합계	1,261	100%
■ 교수 및 대학의 권위적인 분위기	342	27.1%
■ 취업·학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문화	313	24.8%
■ 공론화 및 해결된 전례 부족	143	11.3%
■ 인권보다 성적·실적이 강조되는 문화	142	11.3%
■ 피해자 보호 및 문제해결 장치 미비	132	10.5%
■ 학생들의 무관심	88	7.0%
■ 인권센터의 전문성 및 역량 부족	60	4.8%
■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	40	3.2%
■ 기타	1	0.1%



○ 대학별 갑질실태 조사·평가 미흡

- 대학·대학원생 대상 갑질 관련 대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평가 미 실시

※ (참고) 국가인권위에서 전반적인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만 조사·연구 실시

【 (참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사례 】

-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2009, 국가인권위)
-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16, 국가인권위)
- '대학 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20, 국가인권위)

- 일부 대학이 갑질문제를 포함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공통된 지표없이 대학원 총학생회 등 주도로 조사

< 주요 대학 인권, 연구환경 실태조사 사례('22. 9월 국민권익위 조사) >

대학명	조사연도	조사기관	주요 조사내용
서울대	2012, 2014, 2016	대학원총학생회, 인권센터	인권실태 조사, 제도개선 도출
카이스트	2004~(매년)	대학원총학생회	대학원생활, 연구윤리, 연구환경 조사
포스텍	2013~(매년)	대학원총학생회	인권문제, 연구실복지, 환경 등 조사
한양대	2021	인권센터	인권수준, 침해사례, 연구환경 등 조사
연세대	2022	인권센터	(조사중)
전남대	2022	인권센터	(조사중)

- 대학·대학원생 등은 갑질·인권 문제 예방과 해결 유도를 위해 대학별 조사·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대학·대학원생 제도개선 건의사항('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

-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2 신고처리 절차 및 안내 미흡

○ 갑질신고센터 세부 운영규정 미흡

-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갑질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신고센터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관련 근거 규정 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대학별 운영방식 제각각(별도 운영 18개 대학 기준)

< 대학별 갑질신고센터 운영실태(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갑질신고센터 별도운영	내부규정· 지침 운영	조사위(조사반) 상시 구성	심의위 상시 구성	재심의 제도 운영	처리기간 (90일 이내)
서울○○대 등 18개 대학	서울○○대 등 6개 대학	공주○○대 등 3개 대학	공주○○ 등 4개 대학	전남○○대 등 3개 대학	대구○○대 등 2개 대학

-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나, 행동강령 내 신고 처리규정도 대학별 제각각(홈페이지 내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기준)

※ 일부 대학(39개 대학중 25개 대학)은 대학별 행동강령에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통해 갑질 금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14개 대학)는 갑질 금지 관련 명문규정이 없는 실정

【 (참고) 갑질 등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규정(서울○○대 등 25개 대학교) 】

제○○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교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교직원,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처리기간, 이의신청(재심의) 규정 또한 없으며**, 일부 대학(4개 대학)만 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대학별 갑질신고센터 운영실태('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갑질신고 명문규정	신고규정	처리기간	조사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비밀보장
-	서울○○대 등 39개 대학	-	공주○○대 등 4개 대학	-	서울○○대 등 39개 대학

- 세부규정이 없을 경우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무 운영지침」 준용이 가능하나 **명확한 준용 근거도 없는 실정**

※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무 운영지침」 상 **조사반을 구성, 60일내 신고사항 확인·처리를** 해야 하며, 별도 이의신청 근거 규정 마련

※ 서울○○대 등 **10개 대학만 행동강령 내 교육부 등 상급기관 행동강령 준용** 근거 마련

【 (참고) 교육부 등 행동강령 준용 근거(서울○○대 등 10개 대학교) 】

제○○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갑질신고 관련 업무를 권한 없는 기관에 이관

- 갑질신고를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이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도 없고 인력·예산도 부족한 학내 인권센터에 갑질신고 관련 업무를 이관

< 대학별 갑질신고 처리 유형('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갑질신고센터 운영	인권센터 이관
처리 방식	<div style="text-align: center;">사건접수(총무과)</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 직원(총무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기관 직원 참여 </div> <div style="width: 45%;"> <p>< 교원(교무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조사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기관 직원 참여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p>조사심의위원회 (필요시)</p> <p>징계위원회 심의</p> <p>종결</p> </div> <div style="width: 45%;"> <p>조사심의위원회 (필요시)</p> <p>징계위원회 심의</p> <p>종결</p> </div> </div> <p>※ 학생의 경우 학생과에서 처리</p>	<div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사건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조사 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직원) ※ 필요시 전문가, 외부 직원 참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인권심의위원회 심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심의결과 각부서 통보</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5px;">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총무과 (직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교무과 (교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학생과 (학생)</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부서별 소관 징계위원회 심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5px;">사건 종결</div>
	대학	서울○○대학교 등 18개 대학교

※ 1개 대학은 인권센터와 동시 운영, 6개 대학 미운영

- 이에 따라 갑질피해를 신고하려고 하는 대학(원)생 등에게 혼란과 불편·불만 야기

【 대학·대학원생 불편·불만 의견('22. 9. 30. 대학·대학원 고충청취 간담회) 】

- **권한도 인력도 예산도 없는 인권센터**에서 교수 갑질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제대로 관여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권한있는 부서에서 처리하거나 **강력한 권한 부여**가 필요함

○ **갑질신고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권한 부족**

- 일부 대학은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자(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승진제한이나 전보(분리조치), 성과·포상 시 불이익** 등 추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관련 규정 미흡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보(분리조치)**가 필요하나 관련 근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3개 대학** 뿐

< 위반자 추가 조치 운영실태(’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승진제한, 전보(분리)	성과포상시 불이익	시효연장
규정사례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및 전보조치 를 할 수 있다.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성과금·포상·교육·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관련대학	3개 대학	2개 대학	1개 대학

○ **대학(원)생 대상 갑질신고 안내 미흡**

- 대부분 행동강령 규정상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담을 하고, 이를 위해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관련 규정 부재

※ 행동강령 조사대상 39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전화, 상담실 관련 규정 부재**

※ 1개 대학은 상담 관련 근거 규정조차 없으며, 상담내용 관리 근거가 없는 대학도 존재



- 실제 갑질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18개 대학중 4개 대학은 전담 전화번호 없이 운영 중

< 전담 전화번호 운영 사례(‘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전담 전화번호 운영	전담 전화번호 미운영
경○○대 등 14개 대학	4개 대학

- 일부 대학은 홈페이지내 갑질신고 관련 안내가 없어 대학(원)생 접근 한계

※ 2개 대학은 자체 갑질신고센터 대신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로 안내

< 갑질신고센터 대학 홈페이지 안내(‘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상담 · 신고신청

- ☞ 인권침해 피해자는 방문 및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부서의 전문위원과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사건 신고서는 이메일(ingwon@gwnu.ac.kr)로 7분할이 보장됩니다.
- ☞ 침해 유형에 따른 "상담 및 조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 · 성폭력 : 학생상담센터 (☎033-640-2627(강릉) / ☎033-760-8264(원주))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 총무과 (☎033-640-1727)
 - 그 밖의 인권침해 : 인권센터 (☎033-640-1727)

☛ 상담대상 : 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 인권침해 등 고충처리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ingwon@gwnu.ac.kr)

☞ 침해 유형과 상관없이 사건 신고서는 해당 메일로 통합하여 접수합니다.

☛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경우

- ☞ 전화 상담 : 강릉 033-640-2627, 원주 033-760-8264
- ☞ 방문 상담 : 강릉 학생회관 C3-218호, 원주 학생복지관 W11-307호(전화로 상담시간 예약바람)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또는 그 밖의 인권침해 경우

- ☞ 전화 상담 : 033-640-1727
- ☞ 방문 상담 : 대학본부 1층 118호(전화로 상담시간 예약바람)

경○○대 등 16개 대학

< 갑질신고센터 대신 국민신문고 안내 사례('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신문고' (National Complaints Portal) website. On the left,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신고센터 (Complaint Center), 신고센터 안내 (Complaint Center Guide), 불만신고 (Complaint), 불만접수신고 (Complaint Reception), 갑질신고 센터 (Harassment Reporting Center), and 불합의신고 (Disagreement Reporting).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신고센터 안내' (Complaint Center Guide) and features a lightbulb icon next to the heading '국민신문고 안내' (National Complaints Portal Guide). The text below the heading explains that the portal is a free, 24-hour service for reporting grievances and complaints, and that it is a government initiative to improve public service. Below the main content area, there is a banner for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We will listen to the small voices of the people) and a search bar. The banner also includes the text '국민신문고' and '국민생각함' (National Idea Box).

2개 대학

3 조사 불공정, 징계 부실

○ 갑질신고 조사과정 불공정 우려

- 별도 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교직원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심사 공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 갑질신고센터 운영 18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방침에 따라 조사반을 구성하나 **8개 대학은 내부 교직원 위주로 운영**

< 조사반(위원회) 구성 현황('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미운영	위원회 구성			
	내부 위주	외부전문가 참여	학생참여	명확한 규정 부재
1개 대학	8개 대학	5개 대학	1개 대학*	4개 대학

* 1개 대학 중복(외부전문가, 학생참여 모두 허용)

※ 갑질신고센터 운영 18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방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나 **3개 대학은 내부 교직원 위주로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2. 10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미운영	위원회 구성			
	내부 위주	외부전문가 참여	학생참여	미정
1개 대학	3개 대학	10개 대학	4개 대학*	4개 대학

* 4개 대학 중복(외부전문가, 학생참여 모두 허용)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갑질신고센터, 인권센터 조사·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한 대학도 존재

※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8개 대학 전부 관련 규정 전부**

※ 39개 대학 행동강령 규정상 조사반 운영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은 4개 뿐이며,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한 대학은 **없음**

○ **완화된 징계기준 적용, 사후관리 부실**

-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상 **갑질 처벌기준이 불명확하여** 기타 품위 손상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 완화 사례** 발생

※ 공무원과 달리 징계대상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로 한정 (다만, 징계기준은 일반 공무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공무원, 교육공무원 갑질 관련 징계기준 비교 >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 7호 하목)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7호 라목)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갑질행위 등에 대한 징계기준 완화 적용 의심 사례 >

징계사유	징계시기	징계내용	적용기준
부당지시 및 강요	2019년	감봉1월	대학 자체 징계규정, 기타 품위유지 위반
폭력·폭언	2020년	경징계	징계양정 규칙 별표1, 7호 거목(기타 품위유지 위반)
부당지시	2021년	견책	징계양정 규칙 별표1, 7호 거목(기타 품위유지 위반)

- 일부 행동강령 규정에 '금품수수 위반',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징계기준만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갑질 등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이 불분명

-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령 기준을 적용하되, 자체 '금품수수 위반 시 징계기준' 등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하나 명문 규정이 없어 '금품수수 위반 시 징계기준' 등만 적용(39개 대학 중 13개 대학)
- ※ 일부 대학은 징계근거만 있거나, 상위법령 또는 이에 근거한 별도 징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가능(39개 대학 중 25개 대학)
- ※ 1개 대학은 행동강령 내 별도 징계 근거 부재
- ※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예규 별표상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도록 규정

< 징계 관련 규정 운영실태(23. 3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구분	금품, 외부강의의 위반 시 기준만 마련운영	상위법령 등 징계규정 적용
규정사례	제○조 제○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 1, 별표 3 *등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총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의 금품 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관련대학	13개 대학	25개 대학**

* (별표1)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3)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 25개 대학 중 18개 대학은 징계근거만 규정, 2개 대학은 상위법령 또는 징계규정 적용, 5개 대학은 상위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위반 시 징계기준' 참작 근거 마련

IV. 개선방안

1 대학 내 갑질근절 대책 마련

○ 대학별 갑질실태 조사 및 공표 의무화

- 학내 갑질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대학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 (조사항목 예시) 갑질신고센터 조직 현황, 학내 구성원 인식도, 피해·상담·조사·징계 현황, 피해 사례, 신고자 보호실태, 재발 방지대책 등

※ 세부 실태조사 시기, 항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 표준(안) 제시

⇒ **교육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및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신설)	<p>제○조(갑질피해 방지) ①총장 또는 학장은 학교 내 교직원, 학생들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받지 않도록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총장 또는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내 구성원 인식도, 피해사례 등 관련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p>

- (중장기 정책제안) 교육부 주도 공통된 조사·평가 지표를 개발, 전체 대학 갑질 침해 실태를 조사·평가한 후 대학별 조사결과 공표 검토

⇒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 신설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조(갑질피해 방지) ①교육부 장관은 평가 지표를 개발, 정기적으로 학교별 갑질 침해 실태를 조사·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갑질 신고 제도 개선

○ 갑질신고 세부운영 규정 마련

-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신고 처리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처리기간, 이의신청 등 세부 운영규정 보완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 갑질행위 근절 명문화
- ※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무운영 지침」 참고, 조사위 구성, 60일 내 신고사항 처리, 별도 이의신청 규정 마련
- ※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무운영 지침」 준용 근거 마련
- ※ 대학 내 별도 행동강령이 없는 대학은 별도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갑질행위 금지 명문 규정) >

현 행	개 선(안)
(신설)	<p>제○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 <p>교직원은 <u>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u>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u>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u>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u>교직원, 학생 등</u>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u>부당한 지시·요구</u>를 하는 행위

현 행	개 선(안)
(신설)	3.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 하는 행위 4.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당하도록 부당하게 전가 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교직원, 학생,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 하는 행위

< 개선방안 예시(조사위 구성 등) >

현 행	개 선(안)
(신설)	제○조(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등) ① 행동강령 책임관은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속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 하되,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는 6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조사 이후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갑질신고 2차 피해방지 대책 마련**

- 갑질 예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승진제한**이나 **전보**, **성과·포상 시 불이익** 등 추가 조치 근거 마련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신설)	<p>제○조(징계 등) ①총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교직원에 대하여 ○○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 제한, 전보조치, 성과급·포상·교육·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경우 징계시효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 강화**

- 갑질 상담·신고를 위해 **상담근거**를 마련하고, **상담내용 관리**,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갑질신고센터 전담번호 지정, 대학 메인 홈페이지내 노출하고 정기적인 홍보 실시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신설)	<p>제○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교직원은 알선 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상담·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p>

3 신고처리 업무 공정성 강화

○ 조사 과정 공정성 확보

- 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명 이상 참여 보장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마련

< 개선방안 예시(조사반 구성 등) >

현 행	개 선(안)
(신설)	<p>제○조(위반행위 조사위원회 등) ①(생략)</p> <p>②---(생략) <u>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u>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u>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u>하되, <u>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u>한다.</p> <p>(이하생략)</p> <p>제○조(조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조에 따른 <u>조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척</u>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당해 사건의 당사자</u> <u>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u> <p>②당사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u>기피를 신청</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u>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u> <p>③위원이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회피</u>하여야 한다.</p> <p>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u>기피 신청에 대해 가부를 결정</u>하여야 하며, <u>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u>된다.</p>

○ 징계기준 명확화

-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기준 상 갑질행위를 명확히 표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7호 하목 개정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하.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	하. <u>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학생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u>

- ‘금품수수 위반’, ‘외부강의 신고 위반’ 외 갑질 등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상위법령 등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개선방안 예시 >

현 행	개 선(안)
제○조(징계 등) 제○조 제○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을 별표 1, 별표 3* 등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조(징계 등) 제○조 제○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u>징계 등 필요한 조치</u>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 따르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u>별표○의 금품 등 수수 금지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u> 하여야 한다.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국·공립대학교(54개)

□ 조치내용 및 조치기한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1. 대학 내 갑질근절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 공표 및 피해방지 대책 마련 ⇒ 교육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및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 (중장기 정책제안) 교육부 주도 공통된 조사·평가 지표 개발 전체 대학 실태조사 후 결과 공표 검토 	<p>교육부, 국·공립 대학 (’24. 12월)</p>
2. 갑질 신고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마련 및 위반시 신고, 처리 등 세부 운영규정 보완 ※ 행동강령이 없는 대학은 별도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 갑질 금지 위반자에 대한 승진제한, 전보, 성과포상 시 불이익 등 추가 조치 근거 마련 ○ 갑질 상담근거를 마련하고, 상담내용 관리,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와 홈페이지 노출 등 홍보 근거 마련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p>국·공립 대학 (’24. 6월)</p>

세부과제명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3. 신고처리 업무 공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마련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국·공립 대학 (’24.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기준 상 갑질행위를 명확히 표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7호 하목 개정 	교육부 (’24.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질 등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상위법령 등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정비 ⇒ 대학별 행동강령 규정에 반영 	국·공립 대학 (’24. 6월)

A O C

정 본 입 니 다 .

2023. 6. 1.

국 민 권 의 위 원



A O B C